

보도자료

2013년 12월 27일(금) 14: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장봉진 과장(☎2110-1420)
김은수 사무관(☎2110-1423) kss7004@kcc.go.kr

방통위, OBS경인TV(주) 조건부 재허가 의결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 방송사업 운영을 위해 증자 이행, 적정현금 보유, 최소 제작비 투자 등 조건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2월 27일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12월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경인TV(주)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제43차 회의('13.12.9)에서 재허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된 OBS경인TV(주)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한 데에 따른 것이다.

OBS경인TV(주)가 12월 9일 의견청취 이후 제출한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에 있어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에 비해 그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다소 개선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증자와 관련하여 OBS의 이사회 의사록 및 주요주주의 투자 의향서, 최다액출자자의 이행각서 등을 제출하여 방송사업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속적인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해 '14년 상반기 및 추가 증자 이행을 담보하고, 지나친 비용 감축이 콘텐츠 품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금 유동성과 최소 프로그램 제작 투자비를 확보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가 검토의견, OBS와 최다액출자자의 방송사업 의지 및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OBS경인TV(주)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고, '14년 증자 및 추가 증자 등 단계적인 재무구조 개선¹⁾,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적정 현금 보유액²⁾ 유지, '13년도 수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³⁾ 투자 등을 조건 으로 부과하였다.

1) '14년 상반기 50억원, '14년 흑자 전환 등 경영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15년·'16년 각 50억원 추가 증자, 2) '14년말 기준 최소 87억원, 3) '13년 기준 311억원

또한, 최다액출자자(주)영안모자에 대해서도 증자 참여 및 자금지원 등 이행각서와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번 OBS경인TV(주)에 부과한 조건부 재허가 사항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향후 OBS경인TV(주)가 제출한 계획 및 관련 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안정적인 방송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OBS경인TV(주)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끝.

(붙임)

OBS경인TV(주)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1. 재허가 조건

구 분	재허가 조건
방송사업자 (개별사항)	'13년 재허가시 제출한 재무구조 개선계획 중 '14년도 상반기 증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증자완료(주금 납입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10년도 재허가 조건 및 '12년 시정명령시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고려하여 향후 재무상황 등에 따른 추가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14년 8월말까지 제출(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 첨부)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유동성 확보를 위해 '15년부터 적정현금보유액은 '13년 재허가시 제출한 '14년말 현금보유액(87억원)이상을 유지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방송프로그램 제작투자비는 2013년도 제작투자비(311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결산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방송프로그램 제작투자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 상기 조건이외에 '13년 재허가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및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 콘텐츠 강화계획, 사옥이전 계획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최다액출자자는 재허가시 제출한 증자계획, 이행각서 내용,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 - 최다액출자자는 당사자 관련 법원의 판결취지('12.10월)를 존중하여 방송사업자로서 사회적 신뢰와 공적책임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

구 분	재허가 조건
방송사업자 (공통사항)	1. 편성규약을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표하고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등 운영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2. 경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전문경영인 제도(대표이사) 유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 위촉, 감사제도 강화 등을 시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3. 1일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할 것 4.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5.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6.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2. 권고사항

구 분	권고사항
방송사업자 (공통사항)	1. 간접광고, 협찬 등 심의관련 규정에 대한 방송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의기구, 심의절차 등을 점검하고 자율 심의를 강화할 것 2.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강화할 것 3. 시청자 민원 접수 및 처리, 민원 유형 분석 등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구 분	권고사항
방송사업자 (공통사항)	4. 안정적 방송 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방송사 자체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5. 지상파 난시청 해소 및 직접수신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6. UHD TV·디지털라디오 등 차세대 방송 준비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국산 방송 장비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 및 활용 방안 등을 강화할 것 7.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대액출자자(특수 관계자 포함)와의 내부거래를 지양할 것 8. 대표이사간의 권한 범위를 제도화하고, 방송전문경영인(대표이사)이 책임 경영 실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9.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과 편성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재방송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40% 이내로 운용할 것 10. 선정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9세 이상 시청자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20% 이내로 운영할 것